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2. 1(월) 총 3매(본문 3)	
담당 부서	산업입지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표용철, 사무관 김계홍, 주무관 유용일 • ☎ (044)201-3674, 3677, 3676
보 도 일 시		2016년 2월 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2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

산업단지 개발·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
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·공포 -

□ **산업단지 개발사업**에 **원형지 공급**제도가 도입·시행되어 판교 창조경제밸리,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**공공**이 **개발**하는 산업단지도 **민간**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**특화개발**이 가능해지고,

○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**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**(SPC)은 **공공시행자**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(先)분양 시기가 **최대 18개월** 가량 빨라져 **민관합동 개발**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 (3.1 시행)

○ 또한, **산업단지 재생사업**에 민간(토지소유자·입주기업)의 **사업계획 제안**, 지자체의 민간 대상 **사업계획 공모** 제도가 시행되어 **재생사업**에도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 (2.12 시행)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이 같은 내용의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개정은 작년에 발표한 **"산업단지 개발·운영 규제개선 방안"**(총리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, 7월)의 후속조치로 작년 8월(산단 재생사업 활성화)과 9월(원형지 공급 등)에 개정·공포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.

□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원형지 공급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민간 참여 확대 (3.1 시행)

○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한 **원형지 공급제도**가 시행되어 **민간**이 **초기**부터 사업에 **참여**하여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되며,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**특화개발**이 가능해진다.

- 원형지 **공급가격**은 **감정평가액**(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)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, 원형지를 공급받은 **원형지 개발자**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**5년 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.**

○ 또한, **공공이 사실상 지배력**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(SPC)에는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되어 **토지수용 및 선(先)분양**이 가능한 시기가 **각각 18개월, 12개월** 가량 앞당겨지게 된다.

- **사실상 지배력**을 확보한 경우란 **공공**이 **30% 이상 지분**을 보유하면서 1) **최대 지분**을 보유하거나, 2) 이사회 **임원의 과반수**를 **임명**하거나, 3) 예산 또는 **사업계획**을 **승인**하는 경우를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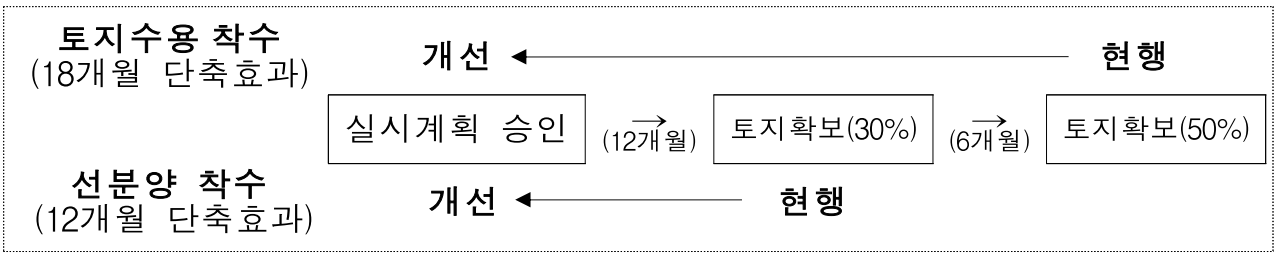

② 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 제안·공모제도 도입 (2.12 시행)

○ 오는 2월부터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·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**민간 제안**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**민간 공모**제도가 시행된다.

- 민간이 사업계획을 **제안**할 때에는 먼저 **토지소유자의 1/2 이상 동의**를 받아야 하며,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**45일 내에 채택 여부**를 **결정**하여야 한다.

○ 또한,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(지구 면적의 30%이내)에 **건폐율·용적률 완화** 및 **개발이익 재투자 면제,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**가 부여되는 **"활성화구역"** 제도도 시행된다.

○ 이렇게 되면, 사업 추진이 **시급한 지역**부터 **민간 주도**로 **우선 정비**할 수 있게 되어 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1차 재생지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**전주** 등에서는 **민간공모, 대전, 대구** 등에서는 **활성화구역 지정**이 **올해 중**으로 **추진**될 예정이며, 이들 지구에 **주택도시기금**을 통한 **투·융자**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③ 유휴 산업단지 활성화 (2.12 시행)

○ **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**을 **촉진**하기 위해 종전에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**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** 시기가 **준공 즉시(2회 분양 공고한 경우)**로 앞당겨지고,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*에는 **준공 전**이라도 **전문업체**에 **분양 중개**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.

*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미분양이 있는 경우

○ 또한, **입주수요 부족**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**산단 지정을 해제**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미활용 산단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다.

* 현재 ① 사업시행자가 없거나, ② 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% 또는 50%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만 지정해제 가능

□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**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**(http://www.law.go.kr)에서 **확인**할 수 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계흥 사무관(☎ 044-201-36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